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희걸 의원 외 17명

나. 의안번호 : 제686호

다. 제출일자 : 2015. 8. 24.

라. 회부일자 : 2015. 8. 31.

## 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와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고 있음
- 그러나, 현재 양천구를 비롯하여 각 구청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이용률은 해당 지역보다 타 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, 서울시는 자치구에 체험장 시설의 설치비만 일부 지원해 줄 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, 해당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
-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1항).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 첨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5. 9. 2 ~ 9. 9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) : 수용 불가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동 조례 제13조<sup>1)</sup> 및 『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 제4조<sup>2)</sup> 등에 따라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(이하 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,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15개 체험장의 경우 자전거 교육을 포함하여 각종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<sup>3)</sup>하고 있음【별첨 참고】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소유·운영하고 있는 체험장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에 첨부된 비용추계에 따르면 체험장 1개소당 운영비를 2천만원으로 가정하고, 각 자치구의 재정력 및 보조율을 고려할 경우<sup>4)</sup> 16개 체험장에<sup>5)</sup> 대한 서울시 운영비 지원액은 연평균 약 1억9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음

1) 제13조(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·운영)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시설을 설치·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·융자할 수 있다.

2) 제4조(보조대상) 서울특별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방재정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3.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,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) 자치구 시설과 별도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난지 및 광나루 교육장이 각각 '10.6월 및 '09.12월 개장하여 자전거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

4) 『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 별표 2 참고

5) 총 17개 교육장(자치구 교육장 15개 및 서울시가 설치한 교육장 2개소)에서 송파구 교육장 제외한 16개소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(추가 시설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)

- 각 자치구 체험장에는 해당 자치구 뿐만 아니라 인접한 자치구 학생들의 이용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<sup>6)</sup>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운영비가 지원될 경우 각 자치구 체험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다만, 자치구 소유 시설인 체험장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비 지급 근거가 미약하고, 동 조례 개정 이후에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설치된 각 자치구 소유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급 관련 민원 또한 증대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

- 한편, 서울시는 시장방침 제622호에 따라 '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참사에 따른 각종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개 체험장 중 유일하게 송파구 체험장에 대해서는 가정안전관·교통안전관·자연재난관·생활안전관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 왔으나<sup>7)</sup> '16년 예산 편성은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본부로 이관하였음<sup>8)</sup>

- 서울시는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『지방재정법』<sup>9)</sup> 위배소지가 있고, 자치구 체험장은 주민의 안전교육을 위해 설치된 구립시설로 법인격이 다른 서울시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부동의 한다는 의견<sup>10)</sup>을 제출하였음

6) 양천구 체험장의 경우 '13년과 '14년 총 이용객(47,461명) 중 양천구 관내 이용객은 13,405명(28.2%)이고, 이외 지역은 34,056(71.8%)임

7) 2011년 이후 약 15억 68백만원 지원

8)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강화 사업으로 7억66백만원 편성(안전총괄본부 사업별설명서 66쪽 참고)

9)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(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10) 보행자전거과-16517(2015.12.14.)

## 【별첨】 각 자치구별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현황

○ 총 17개소 : 자치구 15개소(실내·외 5, 실외 10), 한강사업본부 2개소(실외)

연번	자치구	교육장명	소재지	규모		비고 (조성일)
				실내	실외	
1	용산구	용산구 교육장	이촌동 한강대교북단	-	2,500㎡	'10. 3월
2	성동구	성동구 교육장	마장동 802-2	-	1,749㎡	'10. 5월
3	동대문구	동대문구 교육장	중랑천둔치 제3공원옆	-	2,145㎡	'10. 6월
4	중랑구	중랑구 교육장	중랑천중화체육공원	-	1,800㎡	'10.12월
5	성북구	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	중랑천 둔치		1,794㎡	'14. 7월
6	노원구	노원달마지교통공원	중계동 500	250㎡	1,566㎡	실내'00.6월 실외'99.1월
7	양천구	양천교통공원	신청동 산73-4	456㎡	1,788㎡	'06. 5월
8	구로구	구로구어린이교통공원	신도림동 285-22	-	2,420㎡	'12. 1월
9	강서구	강서교통공원	방화동 581-1	-	2,255㎡	'02. 9월
10	금천구	금천구 교육장	시흥동 784-8	-	805㎡	'08. 9월
11	영등포구	영등포구 안전체험장	양화동 10 - 8	-	2,378㎡	'13.12월
12	관악구	관악구 교육장	신대방역 옆 부근	-	1,000㎡	'10. 6월
13	서초구	서초교통공원	양재동 201	120㎡	5,971㎡	'02. 4월
14	송파구	어린이안전교육관	마천동 산1-10	1,537㎡	2,753㎡	실내'05, 실외'01, 증축'11
15	강동구	강동구 교육장	고덕동 302	183.75㎡	1,248㎡	실내'12.6월 실외'10.4월
16	한강사업본부	난지 교육장	상암동 481	-	2,665㎡	'10. 6월
17	"	광나루 교육장	천호동 483-8	-	5,000㎡	'09.12월